

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6
------	---

제출일자 : 1998. 4. 7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폐지이유
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(법률제5242호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제15498호)이 제정.공포되어 '98. 1 .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 동법령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함

■ 폐지근거

-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

거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중 폐지조례안

거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